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 제1절 통 칙
-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규격
 - 다) 재질·품질
 -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사) 제조공장·처리장
 -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10)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